의안번호	제592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92

제출연월일 : 2024년 5월 31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장기간 동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분) 세율에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를 반영하며

○ 도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 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 인상(안 제11조)

- 현행) 표준세율 ※ 2원/10㎥

→ 개정)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※ 3원/10㎥

○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 인상(안 제15조제1항)

- 현행) 표준세율 ※ 광물가액의 1천분의 5

→ 개정)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※ 광물가액의 1천분의 7.5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표준세율”을 “표준세율의 100분의 150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표준세율”을 “표준세율의 100분의 15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세율)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	제11조(세율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-- ----------.
제15조(세율) ①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 ② (생 략)	제15조(세율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-----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세법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

2. 지하수

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

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

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

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

2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

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6원

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,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장기간 동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분)의 세율을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를 반영하고

○ 도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 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분) 세율 인상(탄력세율 적용)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

3. 관련조문

○ 조례 개정(안) 제11조, 제15조제1항(세율)

가. 발전용수 :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적용 ※ 3원/10㎥

나. 지하자원 :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적용 ※ 광물가액의 1천분의 7.5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2023회계연도 기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			
	계	발전용수	지 하 수	지하자원
2023년도	2,747,114	1,691,454	395,992	659,668

나. 추계 결과(세율인상시) : 1,175,560천원 증가

※ 개정전(2,747,114천원) → 개정후(3,922,674천원)

(단위:천원)

구 분	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			
	계	발전용수	지 하 수	지하자원
2023년	2,747,114	1,691,454	395,992	659,668
세율인상시	3,922,674	2,537,181	395,992	989,501
증가액	1,175,560	845,727	-	329,833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1,175,560	1,194,369	1,213,479	1,232,895	1,252,621	
지역자원시설세 (증가액)		1,175,560	1,194,369	1,213,479	1,232,895	1,252,621	
세 출							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							
구·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

※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(1.6%) 반영